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7. 6.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제안규정」이 제정(2006. 5. 30 공포, 2006. 6. 4 시행)되고, 「공무원제안규정」이 전부개정(2006. 6. 15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의 범위, 대상 확대(안 제3조 및 제4조)

- 제안의 범위를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확대
-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제안의 경우 구청장의 허가없이도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실제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실시제안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제안의 종류를 확대

나. 제안의 처리절차 개선(안 제11조 및 제12조)

- 제출된 제안은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채택제안에 대하여 3년간, 불채택 제안은 2년간 관리하도록 하며,
-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안처리기간·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 제안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안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안의 성과를 높임

다.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을 통한 제안 활성화(안 제14조 내지 제16조)

-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구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 제고
-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채택등급에 따라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 부여
- 우수제안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100만원까지 부상금과 실 시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센티브 확 대를 통해 제안 활동을 적극 참여토록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예산조치 : 추경에 반영

5.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7. 5. 17 ~ 2007. 6. 7)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7. 6. 14)
-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민들이 구 정책 또는 행정제도 ·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인 “구민제안”과 구 소속 공무원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서비스 ·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인 “공무원제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구민 및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추천제안”이라 함은 구에서 심사·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제안주무부서”라 함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시주관부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안자격 및 제출) ①구민 또는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본인 명의로 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접수된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구청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흡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안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창안등급의 결정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관련기관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사기준 등) ①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의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창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구청장표창(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제14조(인사상 특전)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는 경우에는 인사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

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금상에 해당할 경우 주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1. 금상 : 특별승급
2. 은상 및 동상 : 희망부서 전보

제15조(부상금의 지급) ①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 100만원
2. 은상 : 60만원
3. 동상 : 30만원
4. 장려상 : 10만원

②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 등을 증정할 수 있다.

제16조(상여금 지급) 제안의 채택이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17조(그 밖의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8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9조(제안의 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창안의 실시) ①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실시성과의 평가) ①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